

#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8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(2018. 7. 1. 시행)에 따라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였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험료 지원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(안 제3조)

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3조 지원대상 규정으로 이동

나.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내용 반영(안 제3조)

1) 현행 : 월 10,400원 미만

2) 변경 :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 72백만원 확보, 33백만원 추경 확보예정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 법리, 예산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8. 12. 14.~2019. 1. 3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건강보험료 및”을 “국민건강보험료와”로 “이바지하는 것”을 “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보험료”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<u>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</u>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<u>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<u>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</u>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<u>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보험료”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저소득주민”이란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<u>보험료가 월 10,400원 미만인 세대</u>를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“보험료”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</p>
<p><b>제3조(지원대상)</b> <u>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</u></p> <p>1.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</p> <p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</p>	<p><b>제3조(지원대상)</b> <u>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1.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</p> <p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</p>

#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

나. 관련 조문 : 제3조 지원대상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총 비용	105	110	115	140	145	615
세출						
군비	105	110	115	140	145	615

- 산출기초 : 8,700천원 × 12개월 ≙ 105백만원  
2022년부터 한시적 경감 제외

### 3. 관련 의견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 건강증진과  
사회복지 향상 도모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2019년도 군비 105백만원 : 저소득주민 보험료

작성자 :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근호